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2025년 2월 기준)

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 제18조(안전/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 또는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수행 -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등의 확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9조(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6시간/반기) 비사무직 (12시간/반기)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 작업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 특별교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 업무 작업자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준용 16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및 관리하여 기록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지시·안내표지 등을 설치 or 부착하여야 함.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안내표지 / 지시표지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6~9 참조 (종류와 형태, 설치 부착장소, 색도기준 등)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부착 	500만원 이하 과태료 1개소당 10/30/50만원
6	제38조(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방지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대한 위험 방지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비레에 대한 위험 방지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각·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위험방지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7	제39조(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한랭,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방독·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8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보상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유/무선 보고 	은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10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토록 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1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 시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인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및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등의 조정 	5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시설 미협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제6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중류탑·배관·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3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할 수 없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4	제93조(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검사 받아야 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 톨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 KN미만 제외, 고소작업대·차량용,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1,000천만원 이하 과태료
15	제8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톨러기, 고소(高所)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써 사업주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6	제93조(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톨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톨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실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4년마다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7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등 취급 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실시 화학물질의 용기, 포장 등 경고표지부착 	미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인당)
18	제125조(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실시 반기 1회 이상 실시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시 년 1회 실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1,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9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 준수 	미설치: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6개월 ~ 2년 1회_동법 시행규칙 별표 22, 23) 배치전건강진단: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1	제164조(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발생기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등의 서류는 일정기간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각 서류 마다 적용)